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139호의3서식] <신설 2023. 6. 14.>

##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									(	앞쪽)		
접수번호		접수일자				처리기간 즉시						
신청 내용	체류확인서 열람	[	]		체류확	·인서 교	1부		[	]		
개인 신청인	성명 주민등						·민등록(외국인등록 · 국내거소신고)번호					
	주소	(서명 또는 인) 연릭					ţ처					
법인 • 단체 신청인	명칭					사업자	·등록번호	5_				
						연락처	락처					
	소재지			(서명	! 또는 인)							
	방문자 성명 주민등록(외국인등록·국내거소신고)번:						연락처					
	0 L M 0 0	1 -	107(4)-	1607	7-11/14-0	ㅗ/ 근포						
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												
용도 및 목적												
									u ec			
'술입국관리' 는 교부를 신		및 같은 법	시앵큐스	시 세/5	소의2세18	왕에 따	와 외국인	ᆝ제뉴욕	박인스	1 얼담	당 또	
								년	돧	실	일	
○○ 출입국・외국인청(사무소・출장소)장 / ○○ 읍・면・동의 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												
제출 서류	신청인의 신분증명서 ※ 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, 법인인감 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.					- 교부: 1통 400원 할 ※「출입국관리법」 제88조						
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	신청인이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할수 있는 자임을 입증하는 「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5의3에 따른 입증서류											
레지지나 그드신을 드십시												

##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(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제3조의6제2항 후단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이용을 포함합니다)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신청인(위임한 경우 위임한 자)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 상황에 따라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## 위임장

「출입국관리법」 제8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위 신청인에게 외국인 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위임합니다.

				년	월	일
위임한 자 (개인)	성명		주민등록(외국인등록·	국내거소신	l고)번호	
		(서명 또는 인)				
	주소		연락처			
위임한 자 (법인 • 단체)	명칭		사업자등록번호			
	대표자		연락처			
		(서명 또는 인)				
	소재지					

## 유의 사항

- 1. '서명 또는 인'란에는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이 경우 서명을 할 때에는 자필로 신분증명서 상에 표기된 성명을 써야 합니다. 다만, 구술 민원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손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.
- 2. 법인·단체 신청인의 경우에는 '대표자'란에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 인감(사용 인감을 포함합니다)을 찍습니다.
- 3. 동일 신청자가 동일 입증서류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대해 외국인 체류 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「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39호의3서식 및 별지 제139호의4서식에 따라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해당 별지 제139호의3서식과 별지 제139호의 4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확인(간인)이 있어야 합니다.
- 4. 외국인 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의 위임은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, 임차인, 임대차 계약자 또는 매매계약자 본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위임받아 신청하는 자는 위임장과 위임한 자 및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명서[법인・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(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이 필요합니다),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말하며, 대표 자의 신분증명서를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해 제출해야 합니다]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